

음악저작 우선표제 기술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iderations in Developing Guidelines for Recording Preferred Title of Music Works

이 미 화 (Mihwa Lee)**

목 차

- | | |
|-----------------------|-----------------------------|
| 1. 서론 | 4. 음악저작 우선표제 관련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 |
| 2. 음악저작 우선표제 규칙 분석 | 5. 결론 |
| 3. 음악저작 우선표제 관련 지침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RDA 규칙을 분석하고, 여러 국가 도서관의 지침을 분석하였다. 우선, RDA 규칙을 분석하고, 규칙의 별명 및 선택사항별로 자체적인 지침을 개발한 8개 국가도서관에서 RDA 적용 지침을 조사하여 주요 고려대상 규칙을 살펴보았다. 이후 규칙별로 MLA, LC-PCC, DACH의 지침 내용을 분석하여 고려사항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표제 선정과 관련하여 원어표제를 채택하도록 하되 원어표제가 국내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언어의 우선표제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선표제 기술과 관련하여 한 파트 저작, 둘 이상의 파트를 가진 저작, 한 저자의 전집, 특정 작곡유형명의 전집, 불완전한 합집, 여러 작곡가의 합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추가요소로 연주수단, 숫자표시, 음조, 기타 식별특성을 우선표제 기록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작곡유형명과 연주수단을 위한 통제어휘집을 지정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RDA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 지침 개발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으므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관련 규칙 개발과 도서관에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 지침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the guidelines for recording a preferred title in musical works by analyzing the RDA rules and guidelines of several national libraries. First, RDA rules were analyzed, and the primary rules for consideration were examined by reviewing RDA application guidelines from eight national libraries that have developed their own guidelines for alternatives and options of RDA rules. Then,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each guideline, including MLA, LC-PCC, and DACH, practical considerations were to provide. First, the original language title should be adopted in the selection of preferred title, but if the title in the original language is not suitable for domestic users, the title in other languages should be used. Second, the preferred title was examined in aspects of works with one part, works with more than one part, the complete works of one author, the compilation of a specific type of composition, the incomplete compilation, and the compilation of several composers. Third, medium of performance, numeric numbers, key, and other identifying characteristics were presented as additional factors for consideration in the record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or present a control vocabularies for the types of compositions and the medium of performance. This study suggests considerations in developing guidelines for recording the preferred title for RDA musical works, and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ules related to preferred titles for musical works and guidelines for recording the preferred title for musical works in libraries.

키워드: 자원의 기술 및 접근, 음악저작, 우선표제, 목록규칙
RDA, Music Work, Preferred Title, Cataloging Rules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음악, 종교, 법률 저작의 통일표제 구축방안 연구』(2023)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eemh@kongju.ac.kr / ISNI 0000 0004 6431 3495)

논문접수일자: 2024년 1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2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1): 373-393,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1.373>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음악저작의 구현형은 작곡가가 지은 고유표제 혹은 작곡유형명이나 연주수단 중심의 다양한 언어나 문자로 된 관용적인 표제로 발행되고 있어 동일한 음악저작으로 집중시키거나 서로 다른 음악저작을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음악저작은 편곡이나 변주, 다른 악기로 연주되는 등 한 음악저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형이 있어 동일한 음악저작인지 다른 저작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음악저작은 저작이나 표현형 중심의 집중을 위해 통일된 표제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음악저작의 집중을 위해 통일된 형식의 표제를 사용하여 검색의 재현률을 높여왔다. AACR2에서 통일표제는 다양한 표제를 갖는 동일한 음악저작을 모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RDA에서는 AACR2 통일표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우선표제(preferred title)를 신설하여 관련 규칙을 마련하였다. 우선표제를 기반으로 음악저작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여 동일한 음악저작을 집중시키고 검색에서 재현률이나 정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음악저작의 표제는 작곡유형명만으로는 식별이 충분하지 않으며 연주수단, 음조, 기타 식별특성의 다양한 추가 요소를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표제 관련 규칙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표제의 작성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되기 어렵고 사서가 목록규칙을 준용하여 우선표제를 선정하고 기술해야 한다. RDA에서는 6.14-6.18에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관련 규칙을 수록하며, 규칙 조항마다

다양한 별법과 선택사항을 갖는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별법을 적용하는지 선택사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기술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A를 적용하는 국외 국가도서관에서는 RDA 음악저작의 우선표제를 기술하기 위한 도서관 자체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시 일관성을 도모한다. 국내에서도 RDA를 바탕으로 목록규칙이 개정될 예정이고, RDA를 이용하여 서양 음악의 우선표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음악저작에 대한 RDA 적용의 일관성을 위한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음악저작 우선표제 관련 규칙으로 RDA를 분석하고, 여러 국가도서관의 음악저작 우선표제 기록 지침을 분석하여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을 위한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RDA 규칙을 분석하고, RDA 적용 지침을 개발한 8개 기관에서 고려한 규칙, 별법, 선택사항별로 고려대상 조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별된 조항별로 MLA, LC-PCC, DACH에서 개발한 지침의 내용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관련한 국내 연구로 미국회도서관 기술목록규칙을 기반으로 국악음반의 표목선정과 표제사항 기술형식의 규칙을 제안한 연구(손정표, 1969), 서양 고전음악의 한국어 통일표제를 제안한 연구(손정표, 2005), 한국전통음악 녹음자료의 우선표제를 서양음악의 우선표제 기술형식을 바탕으로 한 악곡통일안을 제안한 연구(손정표, 2007), 음악저작의 전거형접근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미화, 2018)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목록규칙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였고, 실제 지침 분

석을 통해 음악저작 우선표제 작성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DA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을 위한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관련 규칙 개발과 도서관에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록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저작 우선표제 규칙 분석

2.1 음악저작 우선표제의 개념 및 기능

목록조직에서 저작을 위한 유일한 식별자이면서 통일된 형식의 표제로 오랫동안 우선표제(혹은 통일표제)를 사용해 왔다. AACR2에서는 통일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RDA에서 우선표제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AACR2(25.1)에서 우선표제의 전형적 기능은 첫째, 특정 저작의 여러 물리적인 인스턴스의 서지적 기술을 모으고, 둘째, 저작이 널리 알려진 표제가 개별자료에 기재된 표제와 다른 경우라도 동일한 저작으로 식별하며, 셋째, 유사한 표제를 가진 여러 저작을 구분하고, 넷째, 유사한 저작 유형을 수록한 개별자료(즉, 모든 종합우선표제)의 서지적 기술을 모으도록 한다(Smiraglia & Beak, 2017, 131). RDA에서 우선표제는 전거형접근점 구성에 사용되며,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첫째, 저작을 구현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동일 저작내의 구현형 간을 식별하며, 동일한 표제를 가진 다른 저작을 구별하고, 한 저작내 여러 표현형으로 구현된 자원을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하며, 관련 저작과 관련 표현형

의 관계를 기술하는 기능을 한다(ALA, CILIP, & CFLA, 2017). 이러한 측면에서 전거형접근점은 저작, 표현형을 식별하여 집중하는 검색의 기능과 저작에서 표현형으로의 계층적 디스플레이와 저작과 저작, 표현형과 표현형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대표적인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 간의 식별 및 집중을 위해 전거형접근점은 통일된 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작성되어야 한다(이미화, 노지현, 2016, 59).

마찬가지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는 음악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표제로 저작 및 표현형의 집중을 위한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접근점의 바탕이 되는 핵심요소이다. 왜냐하면 작곡가-우선표제를 결합한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접근점은 저작 및 표현형의 식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onate für Klavier No. 14 ‘Mondschein’ Op. 27-2” 혹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타나 제14번 c# 단조”, 고유표제인 “월광” 등으로 다양한 표제를 갖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타나 14번의 우선표제로 Sonata, piano, no. 14, c# minor를 선정하고, 이 우선표제를 작곡자와 결합하여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생성하여 동일한 저작을 모두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RDA에서 음악저작 우선표제 기록을 위한 일반적인 결합패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로 된 저작의 표제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둘째, 외국 저작인 경우 우선표제를 기술할 때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단/복수로 기술하거나, 영어로 표기하는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표제가 아닌 식별가능한 고유표제인 경우는 연주수단, 음조, 일련번호/작품번호/주제색인번호/기타번호, 작곡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셋째, 우선표제가 작곡유형명으로 구성된 경우 식별을 위해 연주수단, 음조, 일련번호/작품번호/주제색인번호/기타번호, 작곡일자 등의 추가요소를 부가한다. 넷째, 동일한 우선표제를 가진 서로 다른 저작 간을 구별하기 위해 우선표제가 고유표제이거나 일반표제이거나 상관 없이 식별 요소를 추가한다. 다섯째, 기타로 발췌저작의 경우 저작의 부분을 나타내도록 표시를 추가한다. 또한, 필요시 현재 기술하는 구현형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Smiraglia & Beak, 2017, 131-132).

2.2 음악저작 우선표제 선정과 기술

2.2.1 음악저작 우선표제의 선정

(RDA 6.14.2.3)

음악의 표제에는 우선표제와 이형표제가 있으며 이는 모든 정보원에서 채기 할 수 있지만, 우선표제는 저작을 구현형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표제의 기록은 대문자법, 숫자, 관사, 두문자, 축약어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표제는 저작을 구현형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선정한다.

우선표제의 선정은 150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창작에 따라 구분된다. (1) 1500년 이후의 음악저작의 경우 저작을 구현한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원어 표제를 우선표제로 선정한다. 널리 알려진 작곡가가 만든 원어 표제가 없거나, 작곡가가 원래 사용한 표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알 수 없는 경우, 작곡가의 원어 표제 혹은 원판의 본표제를 순서대로 우선표제로 선정한다. (2) 1501년 이전의 음악저작의 경우 최신

참고정보원에서 널리 식별되는 원어 표제를 우선표제로 선택한다. 최신 참고정보원의 내용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최신 판 - 초기판 - 필사본 순서대로 가장 자주 나오는 표제를 선정한다.

다만, 선택한 표제가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우선하는 문자와 다른 경우 기관에서 사용하는 체계에 따라 번자한다. 작곡가의 원어표제와 원판의 본표제를 찾을 수 없거나, 표제가 없는 저작인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의 최신 참고정보원에서 찾은 표제를 사용하고, 고안한 표제를 사용한다.

2.2.2 음악저작 우선표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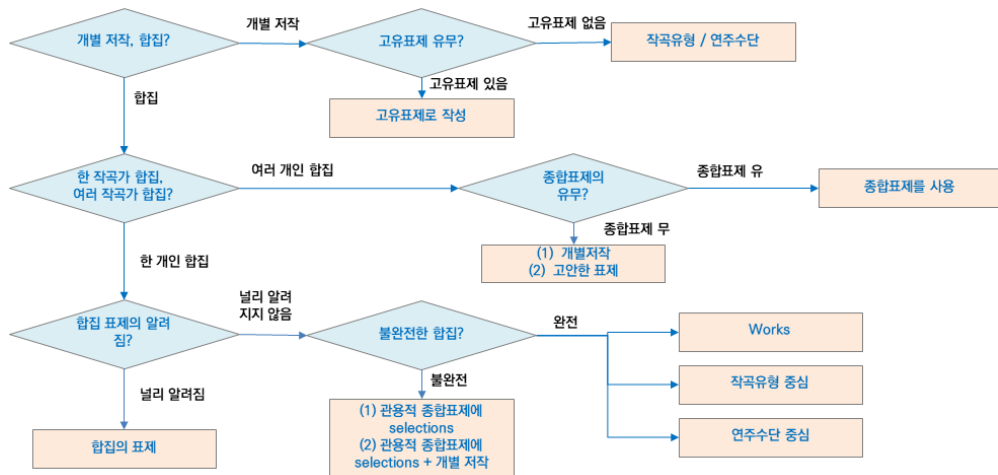
(RDA 6.14.2.5-6.14.2.8)

음악저작의 우선표제를 음악저작의 부분, 한 작곡가의 음악저작의 합집, 여러 작곡가의 음악저작의 합집에 따른 규칙을 적용해 <그림 1>과 같이 기록한다.

1)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록방법을 적용해 개별 음악 저작의 우선표제를 기록한다. 해당시 다음의 생략이나 한 가지 작곡유형명의 언어 및 단/복수 지침을 적용한다.

- (1) 우선표제가 식별되는 경우 연주수단, 음조, 일련번호, 작곡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 (2) 우선표제가 한 가지 작곡유형명인 경우 언어의 선정, 단수 및 복수 형식을 고려한다.
 - ① 언어적으로 작곡유형명이 그 언어와 동종의 형식인 경우 또는 동일 명칭이 그 언어로 사용되는 경우, 작곡유형명



〈그림 1〉 우선표제 기록의 과정

을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우선하는 언어로 기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선표제의 언어와 일치하는 작곡유형명을 기록한다.

② 작곡유형명의 단수 및 복수 형식은 작곡가가 동일한 우선표제로 해당 유형의 작품을 두 개 이상 작곡하지 않는 한 단수형으로 기록한다. 다만, 별법으로 작곡유형명을 단수나 복수형 중에서 일관되게 적용한다.

2) 음악저작 파트의 우선표제

(1) 하나의 파트: 파트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숫자는 수치로 기록한다. 파트의 번호가 이와 관련된 일반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숫자 앞에 Number의 약어 또는 이에 대응하는 다른 언어의 약어를 기록한다. <표 1>과 같이 조건에 따라 파트의 번호 혹은 파트의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 파트의 번호와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로 기록한다.

(2) 둘 이상의 파트: 하나의 파트 기록 지침을 바탕으로 각 해당 파트의 우선표제를 기록한다. 별법으로 음악저작의 둘 이상의 파트를 종합적으로 식별하고자 하는 경우 관용적인 종합표제인 Selections을 파트의 우선표제로 기록하되, 더하여 개별 파트의 우선표제도 기록할 수도 있다.

3) 한 작곡가의 음악저작 합집의 우선표제 음악저작의 합집이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우선표제로 기록한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1) 관용적인 종합표제인 Works를 (2) 공통 연주수단을 이용한 저작으로 구성된 합집은 연주수단의 관용적인 종합표제를 (3) 하나의 작곡유형으로 구성된 합집은 작곡유형명의 관용적인 종합표제를 기록한다. 다만 불완전한 합집은 수록된 각 저작별로 식별하고, 별법으로 관용적인 종합표제에 Selections을 기록하되, 더하여 합집내 각 저작의 우선표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표 2> 참조).

〈표 1〉 파트의 우선표제 기록

조건		적용
하나의 파트	번호로만 식별되는 경우	파트 번호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만으로 식별	파트의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
	번호와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 모두 식별	파트의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가 동일하여 각 파트가 번호로 식별되는 경우	파트 번호
	각 파트가 번호로 식별되고, 일부 파트가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로도 식별되는 경우	파트 번호,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 모두 기록
	상위 파트의 부분	식별시 필요한 경우 상위 파트의 우선표제 다음에 하위 파트의 우선표제 기록
둘 이상의 파트		각 해당 파트의 우선표제를 기록 방법: Selections를 기록(+개별 파트의 우선표제를 기록할 수 있음)

〈표 2〉 한 작곡가의 음악저작 합집의 우선표제

조건		적용 및 예시
널리 알려진 경우		널리 알려진 표제를 기록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한 작곡가의 전체 음악저작으로 구성된 합집	관용적인 종합표제인 “Works” 기록 (예) 베토벤 전집 → Works
	연주수단을 이용한 저작으로만 구성된 합집(수록된 저작의 작곡유형이 다양)	연주수단을 이용한 관용적인 종합표제 (예) 베토벤 피아노곡 전집 → Piano musics
	하나의 작곡유형으로 구성된 합집(수록된 저작의 연주수단이 다양)	작곡유형명을 이용한 관용적인 종합표제 (예)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전집 → Concertos
	불완전한 합집	수록된 각 저작별로 식별 방법: 관용적인 종합표제에 “Selections”를 기록(+합집내 각 저작의 우선표제를 추가할 수 있음) (예) Concerto, Selections

4) 여러 작곡가의 음악저작 합집의 우선표제 종합표제가 구현형이나 참보정보원에서 널리 식별되는 경우 이 종합표제를 합집의 우선표제를 기록한다. 종합표제가 없거나 종합표제가 구현형이나 참보정보원에서 널리 식별되지 않는 경우 개별저작의 우선표제를 기술한다. 방법으로 합집을 위해 고안한 표제를 기록하고, 더하여 합집에 수록된 각 저작에 대한 우선표제를 기록할 수도 있다.

2.2.3 우선표제 추가요소(RDA 6.15-6.18)

음악저작과 표제가 동일한 다른 저작을 식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음악저작의 표제를 식별하기 위해서 연주수단, 숫자표시, 음조, 기타 식별특성 등을 기술한다. 추가요소는 식별에 필요하다면 고유표제에도 기술할 수 있으며, 식별과 상관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연주수단

음악저작이 담고 있는 악기, 성악, 앙상블을

의미하므로 악기나 악기군, 성악이나 성악군, 앙상블명을 기록한다. 연주수단은 가능한 표준 리스트에 수록된 용어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기술 대상 자원에 포함된 연주수단을 해당하는 대로 기록한다.

해당하는 경우, 대체 악기/성악, 더블링 악기/성악, 파트 수, 연주자 수, 손의 수, 앙상블 수를 기술할 수 있다. 다만, 더블링 악기/성악은 생략할 수 있고, 파트나 연주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악기는 두 손이 아닌 경우 손의 수를 기록하고, 앙상블이 하나인 경우 앙상블의 수를 생략한다.

2) 숫자표시

음악저작의 숫자표시는 작곡가나 발행자, 음악학자가 음악저작에 부여한 일련번호, 작품번호, 주제색인번호 등이다. 음악저작의 숫자표시는 no., op., BWV 등과 같은 캡션을 포함하고, 숫자, 문자, 단어, 기타 문자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도 있다.

(1) 일련번호

음악저작의 일련번호는 숫자로 기수로 기록하고, 캡션은 RDA 부록의 지침에 따라 약어를 사용한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 및 문자로 된 적절한 캡션이 있는 경우 그 언어 및 문자의 캡션을 기록한다. 별법으로 캡션을 채택한 정보원에 나타난 언어와 문자의 캡션을 기록할 수 있다. 일련번호에 캡션이 없는 경우, 숫자 앞에 number의 약어를 기록한다. 연속하는 번호가 매겨진 저작 시리즈에서 서로 다른 캡션을 사용한 경우 하나를 선정하여 시리즈에 해당하는 전체 저작에 사용한다.

(2) 작품번호

음악저작의 작품번호에서 숫자는 기수로 기록하고 그 앞에 약어 op.를 기록한다(예: op. 11). 작품번호내에 번호가 있는 경우 쉼표를 써서 같이 기술한다(예: op. 27, no. 1). 동일한 표제와 연주수단을 가진 서로 다른 저작 간에 작품번호가 동일한 경우, 한 작곡가의 저작에 대한 전반적인 작품번호 매김이 복잡하고 상충되는 경우에는 작품번호 다음 괄호 안에 선택한 번호를 사용한 발행처를 추가 기술한다(예: op. 6 (Roger)).

(3) 주제색인번호

작곡가를 위한 주제 색인에서 찾은 대로 저작에 부여된 번호를 기록한다. 주제색인번호에 이와 연관된 캡션이 없는 경우, 번호 앞에 음악학자 이름의 머리글자(예: K. 453 모차르트의 작품번호(K, Köchel))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축약어(예: BWV 232 바흐의 작품 번호(BWV, Bach Werke Verzeichnis))를 기록한다.

3) 음조

음조는 으뜸음이나 주요 으뜸음을 형성하는 음고(音高)관계 세트로 음이름과 음계(장조, 단조)로 표시한다. 음조가 참고정보원에서 널리 식별되는 경우, 음조가 작곡가의 원표제나 첫 번째 구현형의 표제면에 기재된 경우, 기술대상 자원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음조를 기록한다.

2.3 종합 분석

우선표제 선정에서 널리 알려진 원어 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언어가 맞지 않는 경우 번자한다

고 규정하였다. 다만, 번자 방식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는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선호하는 언어는 영어가 될 수도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표제 기술에서 우선표제는 고유표제나 관용적인 표제(고유표제가 아닌 표제)가 될 수 있으며 식별을 위해 추가요소로 연주수단, 음조, 숫자표시, 기타 식별특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소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략에 관한 사항과 작곡유형명의 언어와 단복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한 파트인 경우 (1) 파트의 숫자 앞에 기술하는 약어 결정해야 하며, (2) 파트 번호와 표제에 따라 파트번호, 파트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 파트 번호와 표제나 기타 언어표시 중에서 기술해야 하고, (3) 상위파트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파트인 경우 개별 저작으로 우선표제를 작성할 것인지 관용적인 종합표제로 Selections를 작성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한 작곡가의 합집에서 연주수단, 작곡유형명으로 기술하는 경우 표준리스트에서 해당 용어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질이 아닌 불완전한 합집의 경우 수록된 각 저작별로 식별하는 방법과 Selections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Selections를 사용시 합집내 각 저작의 우선표제를 함께 기록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여러 작곡가의 합집의 경우 합집의 우선표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저작의 수록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추가요소인 연주수단, 숫자표시, 음조, 기타 식별특성의 기술요소와 순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주수단의 경우 대체 악기/성악, 더블링 악기/성악, 파트 수, 연주자 수, 손의 수, 앙상블 수를 기술규칙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규칙에서 삭제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숫자표시의 경우는 숫자와 캡션의 기술 및 캡션을 위한 용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숫자표시를 하는 경우 기술 순서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음조의 경우는 으뜸음과 음계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를 국내에서 적용할 때 번역된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국내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앞의 추가요소로도 식별되지 않는 경우 기타 식별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음악저작 우선표제 관련 지침 분석

RDA 적용시 각 규칙마다 포함된 별법이나 선택사항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결정이 지속적이면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관련 RDA 규칙을 적용하는 국외 국가도서관의 지침 분석을 항목분석과 내용분석의 2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3.1 지침의 항목분석

RDA 적용시 고려할 규칙의 조항을 선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지침을 개발한 Music Library

Association Best Practices(MLA BP), British Library Policy Statements(BL PS, 영국),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olicy Statements(LC-PCC PS, 미국), Anwendungsrichtlinien für den deutschsprachigen Raum(DACH, 독일계), Suomalaisten kirjastojen linjaukset(SKL, 핀란드), Kungliga Biblioteket Svensk Praxis(KBSP, 스웨덴),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Policy Statements NLA PS, 호주), Library and Archives Canada Policy Statements(LAC PS, 캐나다)의 8개 기관의 지침을 조사하였다(〈표 3〉 참조).

5개 이상 기관에서 자체 지침을 가진 조항은 언어 별법(6.14.2.5.2.1), 단복수형 - 별법(6.14.2.5.2.2), 두 가지로 식별되는 파트 별법(6.14.2.7.1.3), 2개 이상의 파트 별법(6.14.2.7.2), 불완전 합집(6.14.2.8.4) > 연주매체 기록(6.15.1.3), 더블링 악기 생략(6.15.1.5), 연주자수 생략(6.15.1.6.1), 앙상블 수 생략(6.15.1.6.3), 일련번호 별법(6.16.1.3.1) > 특정연주수단의 작곡유형 전집(6.14.2.8.3), 주제색인번호(6.16.1.3.3)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조항은 RDA 적용하는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각 기관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므로 우선표제 관련 지침 개발시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2 지침의 내용분석

규칙 적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MLA, LC-PCC, DACH 지침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MLA는 음악도서관협회의 지침으로 음악저작 규칙을 대표하며, LC-PCC와 DACH는 각각 RDA 음

악저작 우선표제 규칙을 적용해 온 영어권과 독일어권의 대표적 기관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3.2.1 우선표제 선정

표제의 정보원으로 참고정보원을 이용하고, 참고정보원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료를 참고하되 정보원의 출처를 기술한다. 독일에서는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와 같은 참고정보원을 명시하였다.

우선표제 선정에서 음악저작의 표제는 대부분 RDA의 규칙을 준용하여 원어표제를 채택한다. MLA에서는 작곡유형명만으로 구성된 표제에 대해 저작을 구현하는 자원 내에 증거와 다양한 참고정보원을 광범위하게 참조하여 우선표제를 선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참고정보원을 바탕으로 작곡가가 사용하는 원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우선표제를 사용한다(〈표 4〉 참조).

3.2.2 우선표제 기록

DACH에서는 우선표제가 구현형의 본표제와 다르거나 추가 특성을 기록해야 하는 경우 저작의 우선표제를 기록하고, 그 이외에는 구현형의 본표제가 저작의 우선표제 기능도 같이 한다고 규정하므로 구현형의 본표제가 우선표제의 기능을 한다(〈표 4〉 참조).

1) 우선표제 기록 일반

개별저작을 작곡유형명으로 기술할 때 참고정보원을 통해 통제어휘집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지침마다 동일하다. 다만, 작곡유형명의 언어 및 단복수형에 대해서는 지침마다 차이가 있다.

〈표 3〉 우선표제 선정과 기록에 대한 각 대표도서관의 추가 지침 여부

	MLA	LC-PCC	BL	DACH	SKL	KBSP	NLA	LAC	횟수
6.14 표제				●					1
6.14.2.2 정보원	●					●			2
6.14.2.3.1 1500년 이후 저작	●								1
6.14.2.4 우선표제 기록				●					1
6.14.2.5.1 생략	●			●					2
6.14.2.5.2 작곡유형명만으로 구성된 우선표제	●			●	●				3
6.14.2.5.2.1 언어	●	●		●				●	4
- 별법		●	●	●	●	●	●	●	7
6.14.2.5.2.2 단복수		●		●					2
- 별법		●	●	●	●	●	●	●	7
6.14.2.7 파트의 우선표제기록	●			●					2
6.14.2.7.1 한파트				●					1
6.14.2.7.1.1 번호로 식별되는 파트				●					1
6.14.2.7.1.2 어구로 식별되는 파트	●								1
6.14.2.7.1.3 두 가지로 식별되는 파트 - 별법		●	●	●	●	●	●	●	7
6.14.2.7.1.5 상위파트의 부분						●			1
6.14.2.7.2 2개 이상의 파트 - 별법	●	●	●	●	●		●	●	7
6.14.2.8 한 작곡가 합집 우선표제				●					1
6.14.2.8.2 특정 연주수단 전집	●			●	●				3
6.14.2.8.3 특정 작곡유형 전집	●	●		●	●			●	5
6.14.2.8.4 불완전 합집	●	●	●	●	●		●	●	7
6.15 연주매체	●								1
6.15.1.3 기록	●	●		●	●	●	●	●	6
6.15.1.4 대체악기				●					1
6.15.1.5 더블링악기				●			●		2
- 생략		●	●	●		●		●	5
6.15.1.6.1 연주자수						●			1
- 예외						●			1
- 생략		●	●	●	●	●			5
6.15.1.6.3 앙상블 수 - 생략	●	●	●	●	●	●			6
6.16 번호	●								1
6.16.1.3 기록				●	●				2
6.16.1.3.1 일련번호	●	●	●		●				4
- 별법			●	●	●	●	●	●	6
6.16.1.3.1 작품번호	●			●	●				3
6.16.1.3.3 주제색인번호	●		●	●	●			●	5
6.17 음조	●								1
6.17.1 기본지침				●					1
6.17.3 기록	●			●	●				3

〈표 4〉 RDA 규칙별 도서관의 지침 - 우선표제

RDA	MLA	LC-PCC	DACH
6.14 음악저작 표제			• 음악저작의 전거레코드는 EH-M-01를 참조
6.14.2.2 정보원	• 참고정보원 이용		• 참고정보원 이용 • 다른 참고정보원 이용시 출처 기술
6.14.2.3.1 1500년 이후 저작	• 작곡유형명만으로 구성된 표제에 대해서는 저작을 구현형과 참고정보원을 이용		
6.14.2.4 우선표제기록			• 우선표제가 구현형의 본표제와 다르거나 추가요소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저작의 우선표제를 별도 데이터요소로 기록함. 이외에는 구현형 본표제가 저작의 우선표제 기능을 겸함
6.14.2.5.1 개별음악저작의 우선표제 - 생략	• 연주수단을 서술하기 위한 “a due,” “a cinque”와 같은 구문을 고려하지만 지침에 따라 우선표제 기록시 위 구문 생략		• 1900년까지의 저작의 경우 “a Due” 또는 “a cinque”와 같은 문구를 표제의 일부가 아닌 추가 요소로 간주
6.14.2.5.2 개별음악저작의 우선표제 - 작곡유형명만으로 구성된 우선표제	• Types of Composition for Use in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Music 등 참조		• 작곡유형명만으로 구성된 우선표제의 경우 AH-002의 용어를 사용
6.14.2.5.2.1 언어	• 작곡유형명이 영어로 된 작곡유형 용어와 동족으로 취급되는지 확인 • Types of Composition for Use in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Music 참조	• 이름이 영어 동족형이거나 동일한 이름이 영어로 사용되는 경우 영어로 된 허용되는 이름의 형식을 기록 - Duet/Duets - Mélodie/Mélodies	• 해당 외국어 용어에 대해 분명히 공통된 어원에 해당하는 독일어가 없는 경우 작곡유형명으로 외국어를 사용
6.14.2.5.2.1 방법		• 언어에 대한 지침은 6.14.2.5.2.1에 대한 정책성명을 참조	•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6.14.2.5.2.2 단복수		• 사망한 작곡가: 참고정보원에서 해당 유형의 작품을 2개 이상 작곡했는지 확인하고 단복수 기록 • 생존 작곡가: (1)작품의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단수형 (2)해당 유형의 작품을 여러개 썼거나 쓸 계획인 경우 복수형	
6.14.2.5.2.2 방법		• 단수형 대 복수형에 대한 지침은 6.14.2.5.2.2에 대한 정책 설명을 참조	• 방법을 적용. 작곡유형 목록(AH002)을 사용하여 복수형으로 기록
6.14.2.7 파트의 우선표제 기록	• 아라비아숫자 이용		• 음악저작의 부분에 대한 전거레코드 기록시 EH-M-01 참조
6.14.2.7.1 한파트			• 레치타티브와 아리아 → 레치타티브 표제
6.14.2.7.1.1 번호로 식별되는 파트			• 우선표제에 사용한 언어로 기술. 해당 언어의 일반적인 축약어 사용
6.14.2.7.1.2 어구로 식별되는 파트	• 부분이 템포 표시로 식별되는 악장의 경우 우선표제로 초기 템포 표시를 사용		
6.14.2.7.1.3 두 가지 모두로 식별되는 파트 - 방법		•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6.14.2.7.2 2개 이상의 파트 - 방법	• 방법 적용 + 필요시 개별 부분의 접근점 작성	• 방법 적용 Selections 기록 + 필요시 부분 우선표제 기록	• 방법 적용 “Selection” 종합표제만 기록
6.14.2.8 한 작곡가 합집 우선표제			• Orchesterstudie는 합집으로 저작으로 기록될 수 있음

RDA	MLA	LC-PCC	DACH
6.14.2.8.2 특정 연주수단의 전집	• LCSH 또는 LCMPT에 수록된 연주수단 용어만 사용		• 악기목록에서 용어 선택해 "Music for"와 함께 기록. 다수의 용어는 엽표로 구분
6.14.2.8.3 특정 작곡유형 전집	• LCGFT 및 Types of Compositions for Use in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Music	• LCGFT 용어 사용	• 작곡유형 기록시 AH-002 용어 사용
6.14.2.8.4 불완전 합집 - 별법	• 별법 준용하되, 필요시 자원에 구현된 모든 개별 저작의 접근점 작성	• "Selections"의 관용적인 종합 표제 사용. 첫 번째 또는 주요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또는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기록	• 별법 준용하되 "Selection"의 관용적 공식표제만 입력하고 전거 레코드에는 입력하지 않음

작곡유형명의 언어에서 MLA와 LC-PCC는 영어로 된 작곡유형 용어와 동족으로 취급되는지 확인한다. DACH에서는 해당 외국어 용어에 대해 분명히 공통된 어원에 해당하는 독일어가 없는 경우 작곡유형명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우선표제의 언어와 일치하는 작곡유형명을 사용하는 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작곡유형명의 단복수형에 대해 LC-PCC에서는 작곡가가 사망한 경우 참고정보원을 참조하여 작곡가가 해당 유형의 작품을 2개 이상 작곡한 경우 복수형으로 기록하도록 하였고, 작곡가가 살아있는 경우 목록 대상 작품에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단수형의 작곡유형명을, 작곡가가 해당 유형의 작품을 더 쓸 계획이 있는 경우 복수형으로 기록한다고 지침을 마련하였다. DACH에서는 단복수형을 일관성있게 사용하도록 한 RDA 별법을 적용하여 복수형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발하였다.

2) 파트의 우선표제

(1) 한 파트

DACH에서는 한 파트의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우선표제에 사용한 언어로 부록에 제시된 대로 축약한다. 파트가 어구로 식별되는데 특별히 부분이 템포 표시로 식별되는 악장인 경우

MLA에서는 독특하게 첫 템포표시를 우선표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번호와 표제 또는 기타 언어표시 모두 식별되는 경우 LC-PCC와 DACH에서 번호와 표제 또는 기타 언어표시를 모두 기술하도록 한 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표제 또는 기타 언어표시를 기술하도록 하여 RDA와 일치하였다.

(2) 2 이상의 파트

2 이상의 파트인 경우 3개 기관 모두 Selections이라는 관용적인 종합표제를 기록하는 별법을 준용하였으며, 필요시 혹은 중요한 경우 개별 저작의 우선표제도 기록한다. 다만, DACH는 Selection이라는 관용적 종합표제만 입력하되 이를 전거레코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3) 합집의 우선표제

합집의 우선표제에 대해 3개 지침은 특정 연주수단, 특정 작곡유형, 불완전한 합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1) 특정연주수단을 이용해 기술시에는 검색을 위해 통제어휘집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MLA에서는 LCSH 또는 LCMPT에 수록된 연주수단 용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DACH에서는 일반 또는 특정 악기의 모든 저작에 대한 우선표제

로 표준화된 악기 정보 목록에서 선택한 용어와 함께 “Music for”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연주수단이 다수인 경우 쉼표로 구분한다.

(2) 특정작곡유형을 이용해 기술시에도 검색을 위해 통제어휘집을 사용하는데 MLA에서는 LCGFT 및 Types of Compositions for Use in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Music을 지정하였고, LC-PCC에서는 LCGFT를, DACH에서는 AH-002 용어리스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3) 불완전한 합집에 대해 MLA, LC-PCC, DACH 모두 별법을 적용한다. MLA에서는 별법을 적용하되 모든 개별저작의 우선표제도 같이 작성하지만, LC-PCC에서는 별법을 준수하되 전체 개별저작이 아닌 첫 번째 저작이나 주요 저작의 우선표제를 작성한다. DACH는 별법을 준수하되 Selection은 전거레코드에는 기술하지 않는다.

4) 여러 작곡가의 음악저작 합집의 우선표제
MLA, LC-PCC, DACH에서 여러 작곡가의 음악저작 합집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없지만 이는 기존 지침을 준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상당히 많은 음악자료가 여러 작곡가의 합집 형태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국내에서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2.3 추가요소

1) 연주수단

MLA에서는 연주수단을 접근점의 구성요소와 함께 382 필드에도 기록한다. 저작의 전거레코드에는 작곡가가 명시한 원래 연주수단을 기록한다. 특히, 전거형접근점에 원래 연주수단을

기록하고, 작곡가가 지정한 대체 연주수단은 382 필드 기록하되 모든 연주수단을 기록할 수 있으며, 서지레코드 382에는 특정 표현형의 연주수단만 기록한다.

연주수단을 기록하기 위한 연주수단 용어는 참고정보원을 이용하는데 이는 지침마다 차이가 있다. MLA와 LC-PCC에서는 표준화된 리스트인 LCMPT를 사용하여 연주수단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DACH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리스트(AH-001)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MLA, LC-PCC, DACH 모두 대체악기, 더블링악기 기록에서 해당하는 악기를 모두 기록하도록 연주수단 기술시 개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연주자수, 앙상블 수 기록에서는 차이가 있다. MLA, LC-PCC 연주자수나 앙상블수 생략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기술하지만 DACH에서는 생략한다. RDA에서는 연주자 수가 하나인 경우 생략하지만 LC-PCC에서는 해당 악기나 성악, 앙상블이 하나이더라도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주수단과 관련된 사항은 연주수단 기술시 생략 여부, 연주자수나 앙상블 수, 손의 수 기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숫자표시

음악저작의 수치표시는 일련번호, 작품번호, 주제색인번호가 있다. 보통은 숫자와 숫자 앞에 캡션을 포함한다. MLA에서는 이러한 번호를 접근점의 구성요소로 기술하고, 383 필드에도 기록하며, 적용가능시 383 필드에 확인가능한 모든 번호(작품번호, 주제색인번호 등)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 일련번호의 경우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DACH에서는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하고, “number”에 해당하는 다양한 언어 형식은 약어 “No.”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수치 앞에 오는 기타 다른 용어는 축약하지 않고, 우선표제에 사용된 언어에 부합하게 기록한다.

반면, MLA와 LC-PCC에서는 동일 표제의 저작이 동일한 연주수단을 갖지 않더라도 음악 참고정보원에서 해당 저작이 일련번호가 매겨진 경우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number”, “book”, “collection” 등과 같은 용어와 자원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기록할 때 다음을 준용한다. ① 용어가 영어 단어 “number” 또는 이의 약어이거나 다른 언어로 된 대등한 단어 또는 약어인 경우, 숫자 앞에 약어 “no”를 기록 ② 용어가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 비영어이고 우선표제가 영어인 경우, 해당 용어와 대등한 영어 약어를 기록 ③ 기타의 경우에는 부록에 따라 축약형을 기록하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자원에 기재된 그대로 용어를 기록한다. 다만, 숫자와 함께 용어가 표시되지 않으면 숫자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술하고 그 앞에 일반 영문 약어 “no”를 기술한다.

• 작품번호는 MLA, DACH에서는 op.와 no.를 사용한다.

• 주제색인번호를 기술하는 경우 MLA, LC-PCC는 주제색인번호의 약어는 Thematic Indexes Used in the Library of Congress / NACO Authority File를 참조한다. DACH에서는 AH-014를 참조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약어를 사용한다.

3) 음조

음조의 경우 MLA에서는 접근점의 구성요소

로 음조를 기술하고, 384 필드에도 음조를 기록하며, 기타 저작에서 쉽게 확인가능하다면 음조를 384 필드에 별도로 기록한다. MLA와 DACH에서는 음조는 음이름과 음계로 기록하되 음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음이름만 기록한다.

4. 음악저작 우선표제 관련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

2장과 3장을 바탕으로 RDA를 바탕으로 한 음악저작 우선표제 관련 지침 개발시 고려할 사항은 우선표제의 선정과 기록, 추가요소, 통제어휘집의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4.1 우선표제 선정

우선표제 선정을 위한 참고정보원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우선표제를 채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참고정보원을 이용해 저작을 기술하도록 하고, 해당 참고 정보원의 출처를 기술하도록 한다.

우선표제의 선정은 작곡자가 작성한 원어표제를 채택하도록 하되 원어가 국내 목록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언어의 우선표제를 사용하도록 언어를 결정해야 한다(〈표 5〉 참조).

4.2 우선표제 기록

음악저작에서 고유표제(예시 ㉠), 작곡유형명을 중심으로 한 관용적 표제(예시 ㉡)의 식별을 위해 추가요소를 기술하되, 작곡유형명을 중심으로 한 관용적 표제인 경우에는 추가요소

〈표 5〉 음악저작 우선표제 기술을 위한 고려사항

		RDA 규칙	지침	고려사항
우선표제 선정		•언어가 맞지 않는 경우 번자	•원칙적으로 원어표제 사용하지만 다른 언어 표제도 허용 •참고정보원 이용	•참고정보원 고려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 고려
우선표제 기술		•추가요소의 생략	•RDA 준용	•식별되는 고유표제는 추가요소를 생략할 수 있지만 관용적 표제의 추가요소에 대한 기술 고려
		•작곡유형명의 언어와 단복수	•작곡유형명으로 외국어 허용 •우선표제의 언어와 일치하는 작곡유형명일 필요 없음 •단복수는 작곡가가 해당 유형의 곡을 다수 작곡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기술 혹은 통일된 형식으로 기술	•언어 한국어와 영어 사용 고려 •영어인 경우 단복수형 고려
파트	한 파트의 우선표제	•파트의 숫자 앞에 약어	•RDA 준용	•약어는 표준 약어 방식을 사용하되 가능한 자료에 있는 그대로 기술할 것인지 고려
		•식별에 따른 파트번호와 표제 및 기타 언어표시의 결합	•식별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 기술	•파트번호와 표제 및 기타 언어표시 모두 기술할 것인지 고려
		•상위파트 생략	•RDA 준용	•상하위 파트 모두 기술할 것인지 고려
	다수의 파트	•개별저작 혹은 종합적으로 식별	•Selections 기록하는 방법 선호	•개별저작 혹은 Selections 기록할 것인지 고려
한 작곡가의 합집	작곡유형명	•통제어휘 사용	•통제어휘 제시	•통제어휘로 기술하도록 참고정보원 고려
	연주수단	•통제어휘 사용	•통제어휘 제시	•통제어휘로 기술하도록 참고정보원 고려
	불완전한 합집	•수록된 각 저작별 •관용적인 종합표제 Selections	•Selections 종합표제 기록 •개별저작 기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주요 저작만을 대상으로 할지 고려	•Selections 기록시 합집내 각 저작의 우선표제도 기록할 것인지를 고려 •각 저작의 우선표제 기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주요 저작만을 대상으로 할지 고려
여러 작곡가의 합집		•합집의 표제로 기술	•RDA 준용	•합집의 우선표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저작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주요 저작만을 대상으로 할지 고려
		•수록된 개별저작으로 기술	•RDA 준용	
추가 요소	연주수단	•표준리스트 사용 •연주수단을 모두 기록(대체 악기/성악, 더블링 악기/성악, 파트 수, 연주자 수, 손의 수, 앙상블 수) •연주자 수가 한명인 경우 기술하지 않음 •악기는 두 손이 아닌 경우 손의 수를 기록 •더블링 악기/성악은 생략가능	•표준 리스트 사용 •대체악기, 더블링악기 등 모든 연주수단 기술 •연주자수, 앙상블 수의 기술 여부 (LC-PCC에서는 한명이라도 기술)	•기술요소와 순서 고려 •연주수단의 경우 대체 악기/성악, 더블링 악기/성악, 파트 수, 연주자 수, 손의 수, 앙상블 수를 기술 규칙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규칙에서 삭제할 것인지 고려
		숫자표시	•no., op., BWV 등과 같은 캡션을 포함 •일련번호: 숫자 앞 캡션은 축약하고 별도 캡션이 없으면 no. 사용 •작품번호: op. •주제색인번호: 부여된 번호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축약어로 기록	•일련번호: 숫자 앞 캡션은 축약(no.)하되 리스트에 없으면 축약하지 않고 기술 •작품번호: op., no. •주제색인번호는 참고정보원 이용
	음조	•음이름과 음계(장조, 단조)로 표시	•음이름 및 음계로 기록. 음계 없으면 음이름만 기록	•옴음과 음계를 표시하게 되는데 국내 적용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고려

가 불필요하더라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료마다 추가요소로 인해 구성요소가 달리 보이는 것보다는 일관된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시 ㉠ 고유표제를 갖는 저작]

100 1_ ▼ aMozart, Wolfgang Amadeus
 ▼ d1756-1791 ▼ tDie Zauberflöte
 100 1 ▼ aMozart, Wolfgang Amadeus,
 ▼ d1756-1791. ▼ tZauberflöte

[예시 ㉢ 작곡유형명의 관용적 표제]

100 1_ ▼ aBach, Johann Sebastian,
 1685-1750. ▼ tMasses. ▼ nBWV 232.
 ▼ rB minor
 100 1_ ▼ aBach, Johann Sebastian,
 1685-1750. ▼ tMassen. ▼ nBWV 232.
 ▼ rh-Moll

4.2.1 파트의 우선표제

1) 한 파트

RDA에는 파트를 파트번호, 표제 및 기타 언어표시, 파트번호와 표제 및 기타 언어표시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규칙은 부분이 식별되도록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식별성 여부와 상관없이 파트번호와 표제 및 기타 언어표시 모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둘 이상의 파트

조사된 기관에서 둘 이상의 파트에 대해 별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별법을 준용하여 Selection의 관용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식별이나 접근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수록된 각 파트별로 개별적인 접

근점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예시와 같이 돈지오바니의 하이라이트 곡만을 수록한 음반은 하나의 상위저작의 하위 저작이므로 전체적으로 Selection을 사용하지만, 수록된 각 부분으로도 접근점을 제공한다.

[예시 ㉢ 둘 이상의 파트에 Selection의 관용적 종합표제]

100 1_ ▼ aMozart, Wolfgang
 Amadeus. ▼ d1756-1791. ▼ ecomposer.
 240 10 ▼ aDon Giovanni. ▼ kSelections
 ← Selection의 관용적 종합표제
 245 10 ▼ aDon Giovanni: ▼ bhighlights /
 ▼ cMozart: libretto, Lorenzo da Ponte.
 505 0_ ▼ aMadamina, il catalogo è questo
 (6:01) -- Là ci darem la mano (3:28)
 -- Don Ottavio, son morta ... Or sai
 chi l'onore (6:33) --
 700 12 ▼ iContainer of (work): ▼ a Mozart,
 Wolfgang Amadeus,
 ▼ d1756-1791. ▼ tDon Giovanni.
 ▼ pMadamina, il catalogo è questo.
 ← 수록자료에 대한 우선표제
 700 12 ▼ iContainer of (work): ▼ aMozart,
 Wolfgang Amadeus,
 ▼ d1756-1791. ▼ tDon Giovanni.
 ▼ pLà ci darem la mano.
 ← 수록자료에 대한 우선표제

4.2.2 한 작곡자의 음악저작 합집의 우선표제

1) 전집, 작곡유형명

한 저작 합집이 전집인 경우 전집(Work)(예시 ㉠), 특정 작곡유형명의 전집인 경우 작곡유형명(예시 ㉢)으로 우선표제를 기록한다. 작곡유형명이 언어에 따라 다양하므로 통제된 용어를 바탕으로 한국어나 영어로 기록하고 영어 작곡유형명인 경우 복수형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한다.

[예시 ㉔: 전집]

- 100 1_ ▼aMozart, Wolfgang Amadeus, ▼d1756-1791, ▼ecomposer.
- 240 10 ▼aWorks, ▼f2016
- 245 10 ▼aW.A. Mozart: ▼bthe new complete edition.
- 505 0_ ▼aChamber, disc 1, Nannerl Notenbuch (excerpts). Andante in C (no. 53) K1a (0:17) -- Allegro in C (no. 54) K1b (0:48) --

[예시 ㉕: 작곡유형명의 전집]

서지

- 100 1 ▼aBeethoven, Ludwig van, ▼d1770-1827.
- 240 10 ▼aSymphonies
- 245 10 ▼Beethoven symphonies collection / ▼cBeethoven : herausgegeben von Jens Dufner.

전거

- 100 1 ▼aBeethoven, Ludwig van, ▼d1770-1827, ▼tSymphonies
- 380 ▼aSymphonies ▼2lcgft
- 382 0 ▼aorchestra ▼2lcmpt

2) 불완전한 선집

불완전한 합집은 선집(Selection)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식별이나 접근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에 구현된 모든 개별 저작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점을 작성하도록 한다. 선집만으로 접근점을 작성(예시 ㉖)할 수도 있지만 개별저작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면 수록된 개별저작으로도 저작/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예시 ㉗)을 기록한다. ㉖의 경우는 개별 저작으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개별저작으로 저작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개별저

작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㉗의 경우는 선집이라는 저작 전거형접근점과 개별 저작으로 저작 전거형접근점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시 ㉖: 선집으로 전거형접근점 작성]

- 100 1_ ▼aHaydn, Joseph, ▼d1732-1809, ▼ecomposer.
- 240 10 ▼aSymphonies, ▼kSelections
- 505 0_ ▼aNo. 3 in G major -- No. 14 in A major -- No. 15 in D major -- No. 17 in F major --

[예시 ㉗: 선집과 개별 저작으로 저작/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작성]

- 100 1_ ▼aHindemith, Paul, ▼d1895-1963, ▼ecomposer.
- 240 10 ▼aSonatas, ▼kSelections
- 505 0_ ▼aOboe sonata -- Clarinet sonata -- English horn sonata -- Flute sonata.
- 700 12 ▼iContainer of (work): ▼aHindemith, Paul, ▼d1895-1963, ▼tSonatas, ▼mOBOE, piano.
- 700 12 ▼iContainer of (work): ▼aHindemith, Paul, ▼d1895-1963, ▼tSonatas, ▼mCLARINET, piano.
- 700 12 ▼iContainer of (work): ▼aHindemith, Paul, ▼d1895-1963, ▼tSonatas, ▼mENGLISH HORN, piano.

이에 LC-PCC에서는 별법을 이용하되 첫 번째 저작이나 주요 저작만을 대상으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저작만 검색하기 보다는 수록된 모든 저작을 검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별저작으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만, 기관이 소규모인 경우 LC-PCC처럼 첫 번째나 중요한 저작에 대해서만 저작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한다.

4.2.3 여러 작곡가의 음악저작의 합집

합집의 표제로 기술할지 수록된 개별 저작으로 기술할지를 판단해야 하며 합집의 우선표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저작의 수록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수백 개의 곡이 수록된 합집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4.3 추가요소

4.3.1 연주수단

저작의 전거레코드에는 작곡가가 명시한 원래 연주수단을 기록한다. 연주수단을 접근점의 구성요소로 기록하는 경우 연주수단도 382 필드에 별도의 요소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 약기나 더블링 약기 기록에서 해당하는 약기를 모두 기록하도록 연주수단의 개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작곡가가 대체 연주수단을 지정한 경우 전거형접근점에 원래 연주수단을 기술하고 382 필드에 모든 대체 연주수단을 기록한다.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연주수단을 기술하지 않는다. 또한, 연주자 수는 기술하지 않는다.

4.3.2 숫자표시

접근점의 구성요소로 일련번호, 작품번호, 주제색인번호를 기술하고 독립된 383 필드에도 기록한다. 복수의 번호를 갖는 경우도 383 필드에서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일련번호는 no.와 아라비아 숫자를 기술한

다. number 이외에 기타 다른 용어는 축약하지 않으며 저작의 우선표제에 사용된 언어에 맞게 기록한다. 숫자와 함께 용어가 표시되지 않으면 숫자를 기수로 기술하고 그 앞에 영문 약어 “no”를 기술하고,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작품번호는 “op.”, “no.”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주제색인번호는 해당하는 고유 캡션과 숫자를 사용하되, 참고정보원을 이용하여 정확한 약어를 사용한다. 주제색인번호도 KV, K, 케헬 등 다양한 용어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제해야 한다.

4.3.3 음조

접근점의 구성요소로 음조를 기술한 경우 384 필드에도 음조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이름은 음계 기록과 동일한 기준을 준용한다. 음조가 제공되거나 분명하지만 음계가 없는 경우 음조만 기록한다. 또한 “sharp” 및 “flat”이라는 단어 대신 기호 # 및 b를 기록한다.

4.3.4 기타 식별특성

저작의 식별특성으로 저작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등을 기술할 수 있으며, 저작일자는 046 ▼k 및 ▼l에 기록한다. 저작의 원생산지는 저작의 전거레코드에 370 ▼g에 기록한다. 국가명이나 국가내 로컬 장소를 적절하게 기록한다. 기타 식별특성으로 우선표제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기술 가능하다.

우선표제의 식별을 위해 연주수단, 숫자표시, 음조, 기타 식별특성을 기록한 경우는 <표 6>과 같다.

〈표 6〉 우선표제를 식별하는 추가요소로 연주매체, 숫자표시, 음조, 기타식별특성

속성	저작 전거레코드에서 우선표제 기술 사례
연주수단	100 1_ ▼aCall, Leonhard von, ▼d1767-1815, ▼tSerenades, ▼mflute, viola, guitar, ▼n op. 5, ▼rC major
	382 0_ ▼afute ▼aguitar ▼aviola ▼2lcmt
숫자표시	100 1_ ▼aBeethoven, Ludwig van, ▼d1770-1827, ▼tQuartets, ▼mviolins, viola, cello, ▼nno. 8, op. 59, no. 2, ▼rE minor
	383 ___ ▼ano. 8 ▼bop. 59, no. 2
	100 1_ ▼aHandel, George Frideric, ▼d1685-1759, ▼tSonates, ▼mviolin, continuo, ▼nHWV 361, ▼rA major
	383 ___ ▼cHWV 361
음조	100 1_ ▼aBeethoven, Ludwig van, ▼d1770-1827, ▼tSonatas, ▼mpiano, ▼nno. 23, op. 57, ▼rF minor
	384 0_ ▼aF minor
기타 식별특성	046 ___ ▼k1884 ▼l1889 ← 기타 식별특성으로 작곡연도
	100 1_ ▼aPuccini, Giacomo, ▼d 1858-1924, ▼t Edgar
	100 1_ ▼aCavalli, Pier Francesco, ▼d1602-1676, ▼tCalisto
	370 ___ ▼gVenice (Italy) ← 기타 식별특성으로 생산지

4.4 통제어휘집 사용

데이터를 구조화하려면 통제어휘집의 사용이 필요하다. 음악저작에서 작곡유형명은 일반 저작의 속성인 저작의 형식이 음악 저작에서 대체된 것으로 통제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검색에 효율적이다. 대표적인 통제어휘로 Types of Composition for Use in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Music 혹은 Library of Congress Genre/Form Terms for Library and Archival Materials(LCGFT) 등의 권위있는 참고정보원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다만, 통제어휘집에서 선택한 용어가 아닌 경우, 출처를 기술하도록 한다. 연주수단을 위한 참고정보원은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LCSH) 또는 Library of Congress Medium of Performance Thesaurus for Music(LCMPT)을 사용할 수 있다. 일관성을 위해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작성한다.

5. 결론

본고에서는 RDA 규칙을 분석하고, 여러 국가 도서관의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RDA 적용시 고려할 규칙을 선정하기 위해 RDA 규칙에 대해 자체적인 지침을 개발한 8개 기관의 RDA 적용 지침을 조사하여 고려할 규칙 조항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조항별로 MLA, LC-PCC, DACH 지침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을 모색하였다. 고려사항은 크게 우선표제의 선정, 우선표제의 기술에서 파트, 합집 기술, 추가요소, 통제어휘집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우선표제 선정과 관련하여 원어표제를 채택하도록 하되 원어는 국내 목록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언어의 우선표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우선표제로 작곡유형명은 적절한 참고정보원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둘째, 우선표제 기술과 관련하여 (1) 한 파트는 파트번호와 캡션의 기술에 대한 것으로 파트번호와 캡션을 모두 기술하도록 하여 식별성 여부에 따른 혼동을 줄인다. 둘 이상의 파트는 선집을 사용하는 RDA 별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수록된 각 저작별로 우선표제를 작성한다. (2) 한 저자의 합집이 전집인 경우 전집(Works)으로, 특정 작곡유형명의 전집인 경우 작곡유형명으로, 불완전한 합집은 선집(Selection)을 사용하는 별법을 적용하되 필요시 수록된 개별 저작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점을 작성한다. (3) 여러 작곡가의 합집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개별 저작의 우선표제로 기록하되 그 기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

셋째, 추가요소로 연주수단, 숫자표시, 음조, 기타 식별특성을 기록한다. (1) 연주수단 기술

시 연주수단의 개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연주자 수는 생략한다. (2) 숫자표시는 일련번호, 작품번호, 주제색인번호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캡션은 no., op.의 축약어를 사용하지만 이외에는 축약하지 않는다. 다만, 주제색인번호는 해당하는 고유 캡션과 숫자를 사용하되, 참고정보원을 이용하여 정확한 약어를 기록한다. (3) 음조는 음이름과 음계를 기록하며, 음계가 없는 경우 음이름만 기록한다.

넷째, 작곡유형명과 연주수단을 위한 통제어휘집을 지정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RDA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을 위한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음악저작 우선표제 지침 개발시 활용할 수 있으며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관련 규칙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손정표 (1969). 국악 레코오드의 정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문화, 10(3), 6-15.
- 손정표 (2005). 서양 고전음악 녹음자료의 국문 우선표제 기술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17, 1-78.
- 손정표 (2007). 한국 전통음악 녹음자료의 우선표제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425-454.
- 이미화 (2018).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규칙 마련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47-166. <http://doi.org/10.16981/kliss.49.4.201812.147>
- 이미화, 노지현 (2016).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47-69. <http://doi.org/10.16981/kliss.47.1.201603.47>
- ALA, CILIP, & CFLA (2017).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Available: <https://www.rdatoolkit.org/about>
- DACH (2017). Anwendungsrichtlinien für den deutschsprachigen raum. Available: <http://original.rdatoolkit.org/nlgpschp0.html>

- LC-PCC (2017).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olicy statements.
Available: <http://original.rdatoolkit.org/lcpschp0.html>
- Music Library Association (2015). Best practices for music cataloging using RDA and MARC21.
Available:
https://cmc.wp.musiclibraryassoc.org/wp-content/uploads/sites/5/2019/01/RDA_Best_Practices_v1.1-1502.pdf
- Smiraglia, R. P. & Beak, J. (2017). Describing Music Materials. Lanham: Rowman & Littlefield.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Lee, Mihwa & Rho, Jee-Hyun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47-69.
<http://doi.org/10.16981/kliss.47.1.201603.47>
- Lee, Mihwa (2018). A study on the considerations in rules for authorized access points of music 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47-166.
<http://doi.org/10.16981/kliss.49.4.201812.147>
- Sohn, Jungpyo (1969). A study on cataloging Korean traditional music recording. *Library Culture*, 10(3), 6-15.
- Sohn, Jungpyo (2005). A study on Korean preferred title for western classical music. *Social Science(Kyungpook University)*, 17, 1-78.
- Sohn, Jungpyo (2007).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uniform title for sound recording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425-454.

